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안)

2022. 1.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

차 례

I. 추진 개요	1
II. 2021년 주요 성과	2
III.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 개요	5
IV. 2022년 추진계획(안)	6
V. 향후 추진일정(안)	12
VI. 행정사항 등	12

I.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추진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 경과

- (1963년) 「교육법」에 근거,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1978~81년) 「학술진흥법」 제정(1979년), '학술진흥재단' 설립(1981년)
- (2007년) 인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인문한국(HK) 사업 시작
- (2009년) 한국연구재단 출범('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등 통합)
-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

□ 추진 체계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 연도별 종합계획은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
- (전문기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 (주관연구기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학술·연구 관련 업무 지원
 -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학술단체(학회) 등

Ⅱ. 2021년 주요 성과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련 법령 개정

- 학술진흥법에 근거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혁신법 상당 부분이 적용 제외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개정(21.12)

- 혁신법 적용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인문사회 분야 특성에 맞는 학술·연구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선결조건 충족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내용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업추진절차 (공고·선정·평가 등)	他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他법률을 따름	혁신법 적용 제외
연구비 집행	혁신법 적용	혁신법 적용 제외
연구성과물 관리	혁신법 적용	혁신법 적용 제외
기술료	혁신법 적용	혁신법 적용 제외
제재처분	혁신법 적용	혁신법 일부 적용
연구노트 작성	혁신법 적용	연구노트 작성 제외

-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 및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 개정사항) ①교육부가 대학 등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대학 등은 규정 마련 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함 ③연구윤리 실태조사 운영의 법적근거 및 실효성 강화

□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

-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 연구자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안정적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90억 규모의 재정 투자

<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지원규모 >

구분	A유형(장기지원)	B유형(단기지원)*	합계
과제 수	600과제	2,000과제	2,600명
예산	210억원	280억원	490억원

*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 연구자 2,000명(강사경력자 393명 포함) 지원

- 학문후속세대가 강의 및 강의로 관련 불공정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 강의 및 강의로 가이드라인 >

- ▶ **(적용대상)**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강의 시* 적용
 *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은 공개 임용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인건비를 받은 비전임 연구자를 강사 또는 겸임교원 등으로 특채할 수 없음(『고등교육법』 제15조, 제17조, 시행령 제4조의8)
- ▶ **(강의료)** 연구자들이 대학 강의 시 강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 시 (시간)강사 지급 단가와 동일하게 지급
- ▶ **(강의학적)** 강의 가능 학점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의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야 함
 ※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또는 관계법령, 각 연구사업별 시간 강의 학점 제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함

□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반 지원 강화

- 연구소 연구인력의 우수 연구자 양성 지원 및 연구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인력 처우 개선 및 일자리 확대
- 전담연구인력 채용 인원 수를 확대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 확대로 연구소 운영 부담 완화

< 연구소 지원사업 채용인원 수 및 평균 인건비 지원규모 변화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2021년)	
	인문사회 연구소	채용인원 수	2명 이상	채용인원 수
	평균 인건비	연평균 3,000만원/인	평균 인건비	연평균 4,000만원/인
사회과학 연구지원 (소형 신규)	채용인원 수	자율	채용인원 수	1명 이상
	평균 인건비	연평균 3,000만원/인	평균 인건비	연평균 4,000만원/인
인문한국 플러스 (2유형 신규)	평균 인건비	연평균 3,000만원/인	평균 인건비	연평균 4,000만원/인

- 연구 몰입도를 향상하고 연구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전담인력 고용 지원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행정 전담인력 지원 관련 변화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2021년)	
	인문사회 연구소	채용인원 수	해당없음	채용인원 수
	평균 인건비	해당없음	평균 인건비	연평균 1,600만원 이내/인

- 코로나19 등 학술환경 변화로 인한 제약 발생에 대응하여 원활한 학술·연구 활동 수행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
 ※ 연구기간 연장 및 연구비 이월 허용,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평가 도입 등

□ 인문학 기반 학술성과의 세계화 및 사회적 확산

- 제7회 한·중 인문학 포럼을 개최(‘21.11.)하여 인문학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자 간 교류·협력 체계 강화
 ※ 총 263명 참여(한국 연구자 18명, 중국 연구자 19명, 온라인 참여자 226명 등)
-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ICT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콘텐츠 확산 추진**
 ※ ‘K학술’이란 : 기존 국학 및 지역학의 개념을 넘어, 세계 학문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보편성 및 표준성을 지니며 미래 한국의 긍정적 영향력 확산에도 기여할 한국학
 ※ K학술확산연구소 10개 선정, 연구소별 매년 10억, 5년간 총 50억 지원
-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성과의 사회적 활용 확대
 ※ 인문대학생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인문학 맞춤형 콘텐츠 제공, 학문후속세대 연구자의 학술동향 정보제공 및 연구품질 제고 지원을 위한 연구자·평가자로 구성된 컨설팅단 운영

□ 연구윤리 확립 및 학술데이터 이용 확대

-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학 등에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지원 제공* 및 연구부정 관련 사안 대응 강화
 * 연구윤리교육 및 컨설팅 제공, 각종 가이드라인 제공 및 연구윤리 포럼 개최
- 서울교대에서 운영하던 **연구윤리포털(CRE)**을 연구윤리지원센터로 **이관**하여 대학·연구자 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대학과 연구자의 수요가 높은 학술자원의 **대학라이선스(전자 정보이용권) 확대 지원** < 한국판 뉴딜 과제 >
 - 세계점유율 1,2위 전자저널 패키지 **Wiley Online Journal**(‘20년) 도입, **ScienceDirect**(‘21년) 도입
 ※ SD 구독조건 : 비구독대학(100개 기관)은 24시간 RISS에서 무료 열람 가능
 ※ 협상 집중도를 위해 2개의 협상단 분리 운영(일반저널, 핵심저널)

III.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 개요

추진 목표

학술·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균형발전을 통한
인문·사회과학의 미래사회 변화 및 혁신 선도 지원

추진 내용

- ① 연구자 성장단계별 연구 지원 활성화
- ② 대학 인문사회 연구기반 확충
- ③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학술기반 구축

전체 사업 구조도

지원영역 지원유형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사회과학	한국학		
① 개인연구	▶ 학문 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 신진·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지원 ▶ 명저번역 및 저술·출판		▶ 고전문헌 국역지원 ▶ 한국학대형기획총서		
	▶ 일반 공동연구(2인이상)				
② 집단연구	▶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	▶ K-학술확산연구소 ▶ 해외한국학		
		사회과학연구(SSK)			
③ 기반구축	인문학대중화	학술단체지원	우수학술 도서	학술자원공동 관리체계	연구윤리

※ 인문사회 분야, 한국학 분야 공통 분야 (출연·연구기획평가사업 미포함)

IV. 2022년 추진계획(안)

1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 중점 추진 방향

- (융·복합 연구 지원) 과학기술 중심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사회분야 중심 융·복합 연구 본격 지원 및 우수성과 도출 추진
- (제도 정비) ①인문사회분야 학술활동 활성화 및 성과 창출 지원 ②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③사업 운영의 책무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추진
- (성과 확산·공유) 성과확산센터·연구윤리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성과 확산·공유 내실화

□ 주요 예산지원 전략

-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 및 생애주기별(신진→중견→우수학자) 연구자 지원* 추진, 학술활동 성과축적을 위한 저술출판 지원
 - *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A유형(장기지원) 확대 : ('21년) 600과제 → ('22년) 896과제 (신규·계속과제 모두 포함)
 - ** 저술출판지원사업 신규과제 확대 : ('21년) 52과제 → ('22년) 90과제
- (공동·집단연구)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융·복합 연구 및 사회과학 연구 지원 확대,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규모 확대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미래공유형' 신설(2과제),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신규과제 수 확대*, 해외한국학 지원 예산규모 확대**
 - *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신규과제 확대 : ('21년) 10과제 → ('22년) 16과제
 - **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 : ('21년) 7,368백만원 → ('22년) 9,444백만원
- (기반구축) 데이터 축적·공유·확산을 위한 학술DB 공동활용 확대* 및 한국학 자료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 학술DB 및 일반저널^{패키지} : ('21) 46종 → ('22) 54종 / 핵심전자저널^{패키지} : ('21) 2종 → ('22) 3종
 - ** 한국학 자료 통합플랫폼 구축 : ('21년) ISP 완료 → ('22년) 1차년도 사업비 1,243 백만원 반영

< 유형별 예산 및 과제 수 내역 >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21		2022		증감	
		예산	과제수(신규)	예산	과제수(신규)	예산	과제수
총계		2,968	5,640(3,841)	3,030	5,469(3,485)	62	△171
□ 개인연구		1,004	4,931(3,652)	1,077	4,836(3,321)	73	△95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교수	18	46(-)	-	-	순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492	2,601(2,301)	582	2,697(2,100)	90	96
단계별 개인연구	신진연구자	177	887(572)	168	764(500)	△9	△123
	중견연구자	225	1,022(593)	234	975(500)	9	△47
	우수학자	13	32(8)	12	26(10)	△1	△6
기타 개인연구	한국학총서	10	27(1)	9	3(1)	△1	△24
	고전문헌국역지원	38	90(90)	35	85(85)	△3	△5
	명저번역	16	74(35)	16	78(35)	-	4
	저술출판	15	152(52)	21	208(90)	6	56
□ 공동연구		417	400(122)	352	339(130)	△65	△61
인문사회	일반공동	286	296(87)	230	235(95)	△51	△61
	학제간융합	10	4(-)	5	2(-)	△5	△2
한국학	해외한국학	74	73(33)	94	85(30)	20	12
	국내한국학	47	27(2)	23	17(5)	△24	△10
□ 집단연구		1,191	309(67)	1,178	294(34)	△13	△15
인문사회연구소		559	188(44)	628	189(17)	84	1
인문한국(HK)/(HK ⁺)		349	46(3)	334	42(1)	△15	△4
사회과학연구(SSK)		123	42(10)	108	50(16)	△15	8
K학술혁신연구소		100	10(10)	100	10(-)	-	-
토대연구	인문사회	49	19(-)	5	2(-)	△44	△17
	한국학	11	4(-)	2.5	1(-)	△8.5	△3
□ 성과확산 및 기반구축		356	-	423	-	67	-
인문학대중화(인문도시 등)		23	12(7)	35	17(5)	12	5
우수학술도서		23	-	24	-	1	-
기초교양교육강화		12	-	12	-	-	-
학술단체지원		69	1,976	70	2,035(59)	1	59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215	-	268	-	53	-
연구윤리활동지원		14	13	14	13	-	-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비 사업 미포함

< 학술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이 상당 부분 제외되어,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 수행 예정
 - ※ 사업 적용법률 : (~'22.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22.3.1.~) 학술진흥법
 - 학술진흥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또한, 사업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훈령을 제정하여 사업관리 관련 사항 명확화
- ☞ 학술진흥법 적용 및 법령·규정 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종합계획 보완 예정

②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연구윤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연구윤리 확립
 -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

< 연구윤리 제도개선 주요 추진사항 >

-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과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중
 - (개정안 주요 내용)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 규정, ②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부가 규정의 적절성 검토·정비 요구, ③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근거 강화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침 적용 대상 및 연구윤리 검증주체를 확대하고, 연구윤리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명확화 하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마련 중

<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 : 개인연구 >

① 학문후속세대 지원 체계 효과성 제고

- 인문사회 분야 학술 활동을 견인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
- 학술·연구 초기 단계 비전임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술·연구 활동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 지원규모 >

구분	A유형(장기지원)		B유형(단기지원)		계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2021년	210억원	600개	280억원	2,000개	490억원	2,600개
2022년	328억원 (+118억↑)	896개 (+296개↑)	252억원 (△28억)	1,800개 (△200개)	580억원 (+90억↑)	2,696개 (+96과제↑)

② 성장단계별 연구자 지원 강화

- (신진·중견연구) 수월성 기반 사업인 신진연구, 중견연구자의 실효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예산 확보
 - ※ 2022년 신진·중견연구 402억원 투자 및 1,739개 내외 과제 지원 계획
- (우수학자)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고경력 우수 학자로 성장하고 관련 성과가 사회적 확대·재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공동연구) 융·복합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인문사회 학술·연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
 - ※ 융·복합연구 신규 예산 확대: ('21년) 1,425백만원 → ('22년) 2,400백만원(68.4%↑)
- (저술출판) 학술 활동 결과물 창출을 통한 연구자 역량 개발과 성과물의 시민사회 확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 지원 강화
 - ※ 저술출판지원 신규 예산 확대: ('21년) 520백만원 → ('22년) 900백만원(73.1%↑)

<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 : 집단연구 >

① 인문사회 분야 기반의 융복합 연구소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내 '미래공유형' 유형을 신설하여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연구 인프라 강화 및 인력 양성 지원
- 인문·사회·문화·예술 등 인본적 가치와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복잡한 미래사회에 대한 혁신적 대응 방안 마련 지원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내 '미래공유형' 사업 주요내용 >

- (목적) 인문사회 학술 역량과 과학기술 간의 연계·융합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학술·연구 성과 도출 및 국가 혁신성장 동력 마련
- (지원내용) 3년 간 시범사업으로 추진, 시범사업 지원 결과에 따라 확대 검토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3년('22년~'24년) 동안 총 37억원 지원 / 2과제 신규 선정
 - (지원대상)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
 - (지원분야) 인문사회 분야를 기반으로 한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

② 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 및 다양성 제고

- 학술·연구 기반 국가 아젠다 도출과 사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과학 성과 창출 및 차세대 육성 인프라 지원 강화
-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지원과제 수를 확대*하고, 지역과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추진
 - * 소형 지원 과제 수 ('21년) 20개(신규 10개) → ('22년) 38개(신규 15개)
 - **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연구팀에 대한 할당제 실시

③ 성과 확산 거점 마련 및 제도 개선

- 각 세부사업별 성과확산센터*가 사업 우수사례 전파 및 성과 공유·축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성과확산센터 발전방안 중장기 검토 추진
 -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일반공동연구, 인문한국플러스(HK+), 사회과학지원(SSK) 사업 성과확산센터
 - 당초 정량적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던 연차 점검을 컨설팅으로 개편하고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효율성 강화
- ※ 단, 사업 세부 유형 및 내용에 따라 별도 평가 체계 운영 가능

< 한국학 진흥 >

① 한국학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대 지원

-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학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지속 추진
 - ※ 총 10개 연구소 지원('21~), K-MOOC를 통해 매년 100개의 한국학 강좌 제공 예정
- 한국학 관련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한국학자료의 공유·연계를 위한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ISP 완료, '22.~'26.)
 -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 규장각 등

② 해외 한국학 지원 확대

- 신남방·신북방 지원, 공공외교 등 정책 수요 및 해외 한국학 교육·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한국학' 지원 확대
 - 한국학 미개척 지역 대상 전략적 지원, 한국학 인프라 구축 발전 단계별 체계적* 지원 강화
 - * 초기(씨앗형) - 정착(중핵) - 성숙·확산(거점운영연구소, 세계화랩)

< 성과확산 및 학술기반 구축 >

① 연구윤리 확립 및 학술단체 지원

- 연구윤리 정책 허브로서의 연구윤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
 - * 연구윤리정보포털을 통한 연구윤리 관련 상담·정보제공 서비스 기능 강화
- 학술환경 변화(비대면, 국제화 등)에 따라 학술단체 지원사업 집행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 기능개선 추진
 - *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비용, 국제 학술성과 공유를 위한 외국학자 발표수당 등 집행 범위 확대

② 핵심 학술 DB 공동활용 확대

< 한국판 뉴딜 과제 >

- 핵심전자저널 1종 및 학술DB·소규모 전자저널 8종을 추가 도입하여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술연구기반 강화
 - ※ 학술DB 및 일반저널^{백7} : ('21) 46종 → ('22) 54종 / 핵심전자저널^{백7} : ('21) 2종 → ('22) 3종

V. 향후 추진일정(안)

- 2022년 종합계획 확정 : '22. 1월 ※ 보도자료 배포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22. 1월 중
 - 사업 설명회 개최 : '22. 1월
- 연구 계획서 접수 및 평가 : '22. 2. ~ 8월

VI. 행정사항 등

1 사업위탁 및 지정

□ 교육부-전문기관 간 사업위탁 협약 체결

-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 체결
-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장)이 수립한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 ※ 전문기관과 과제 수행 주체 간 협약은 전문기관에서 체결할 수 있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73조 등에 따른 행정기관 승인 업무 위임 포함

□ 전문기관 장의 사업비 관리 및 운용사항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 설정
 -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계좌 통합관리가 가능, 각 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하도록 조치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지원성과 등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 학술표준분류체계 전담기관 지정

- 효율적 연구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학술분야 분류체계 수립, 작성 등 총괄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연구재단 지정**
 - ※ 관련규정: 「학술진흥법」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 추진

□ 사업추진의 공정성 및 책무성 강화

- **(사업 공통) 연구 계획서 작성 시 연구자 자율성을 확대하되 초과분량 및 중복성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신규 연구계획서 작성 시 **초과분량 작성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하여 평가 및 선정의 공정성 제고**
 - ※ 사업 공고 및 평가 시 분량 초과에 따른 평가 시 불이익 사항 안내 강화
 - 연구계획서 간 중복성 방지를 위한 유사도·중복성 검토를 통해 연구지원 투명성 강화 및 연구자 책무성, 공정성 제고
 - ※ 연구계획서 유사도·중복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 병과 가능
- **(집단연구지원사업) 수행과제에서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및 연구부정행위 사례발생 시 연구조직(연구소, 대학 등) 대상 행정조치 시행**
 - 사업 참여인력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인력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소 및 대학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 실시

□ 연구자 학술활동 수행전념 기준 완화

- **(2책3공 운영) 역량 있는 연구자가 학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연구자 연구 기회 확대 및 자율성 확보**
 -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 단,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및 수행 중인 과제가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제 수 산정 시 미포함(단, 인건비 중복 수혜는 불가)
 - ※ 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 ① 우수학자지원사업 ②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성과확산센터(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한·중인문학포럼)
-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총괄확산센터
-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 신청 및 수행 제한

-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당연 취소
- 참여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연구자 학술활동 수행전년 기준(2책3공)에 따른 수행 가능 과제 수를 초과한 자
 - ※ 단,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 수 미포함 사업은 제외
 - ※ 기타 신청 및 수행 제한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 학술지 실태점검 결과 학술단체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학술단체(학술단체지원사업에 한함)

□ 성비위 및 갑질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대학 자체 감사·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됨'을 협약서에 명시
 - ※ 근거규정: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 갑질의 개념 >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3 시스템 운영 및 연구지원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적용 및 연계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통합 Ezbaro)을 사용하거나,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자체시스템과 통합시스템 간 연계하여 관리 추진

□ 연구지원 행정 효율성 제고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운영**
 - * 단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정책중점연구소의 경우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
 - 혁신법 개정안 시행 후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관리 규정(훈령) 마련 예정
- **범국가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연구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등 사안에 따른 유연한 제도 운영**
 -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제도 운영**
 - ※ 연구 수행 차질 최소화를 위한 연구기간 연장, 연구비 이월범위 확대 등
 -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평가, 관련 회의 등의 **비대면화**를 위한 **온라인·화상 채널 등 적극 활용**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괄

(단위: 백만원, 개)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연구 개시	'22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인문 사회 학술 연구 교수	장기 유형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내외 강연·교육 등 학술 관련 활동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만 60세 이하	40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포함)	5년 (2+3)	('21) 4.1 ('20. 신규) 7.1.	32,840	896
		단기 유형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만 64세 이하	14백만원 이내 (간접비 1백만원 이내포함)	1년	9.1.	25,200	1,800
		성과 확산 센터	비전임 연구자 연구 성과 확산 및 연구 네트워킹 지원 등	국내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관·단체	150백만원	최대 5년 (2+3)	9.1.	150	1
인문 사회 기초 연구	일반 연구 지원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 의욕 고취 및 연구 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20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5.1.	16,808	764
		중견연구	중견연구자 개인 연구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10/20백만원 이내	10년 (5+5)/ 7년 (3+4)/ 1~3년	7.1.	23,400	975
		우수학자 지원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우수 학자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50백만원 (간접비 포함)	5년 (3+2)	('21) 6.1 (신규) 9.1.	1,175	26
		일반공동 지원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50/150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21) 4.1 (신규) 7.1.	23,039	235
명저번역지원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 보급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하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도서별 분량과 년수도 고려하여 지원 (간접비 없음)	2년 3년	7.1.	1,638	78	
인문 사회 연구소 지원	인문 사회 연구소	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260/300/520 백만원 이내 (간접비별도) ※유형별 상이	3년/ 6년(3+3) /9년 (3+3+3)	(계속) 6.1 /9.1. (신규) 9.1.	62,615	188	
	성과 확산 센터	연구소 간 성과교류 및 성과확산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50백만원/연 (간접비포함)	3년	11.1.	150	1	
학제간 융합연구		인문사회와 이공계 분야와의 융합연구 활성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융합분야 연구팀	200백만원 이내	5년 (3+2)	9.1.	510	2	
토대연구		연구토대가 되는 기초자료, 사전 등 연구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260백만원 이내	3년/ 5년 (3+2)	7.1./ 9.1.	770	3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연구 개시	'22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인문 학 진 흥	인문 한국 (HK)/ 인문 한국 플러스 (HK')	1유형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최대 17억원 ※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간접비 포함	7년 (3+4)	5.1.	27,370	23	
		2유형	우수 HK연구소의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기 구축된 HK 연구 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연구 심화 발전	HK사업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	3.3억원 이내 ※ 지역인문학 센터 운영비 /간접비 포함	7년 (3+4)	(계속) 3.1./ 6.1/ 9.1. (신규) 9.1.	5,858	18	
		성과확산 총괄센터	연구소 간 네트워크 및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주도	HK연구소 협의회(지정)	130백만원 이내 (간접비포함)	2년 (1+1)	9.1.	130	1	
	저술출판지원	인문사회분야 저술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10백만원 (간접비 없음)	2년 3년	5.1.	2,080	208		
	우수학술도서	기초학문분야 우수 학술도서 선정 및 보급	대학도서관 등	-	1년		2,400	-		
	인문 학 대 중 화	인문도시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및 지역 간 네트워크체제 활성화	전국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140백만원 이내 (간접비 10백만 원 포함)	1/3년	7.1.	2,380	17	
		인문학 포럼	세계 인문학포럼 및 한·중 인문학 포럼 운영	-	-	-	-	580	-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	-	-	-	-	500	-	
	사 회 과 학 연 구	사회 과학 연구 (SSK) 지원	소형			15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10년 (3+3+4)	(계속) 6.1 /9.1. (신규) 9.1.	10,498	38
			중형	사회과학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 육성 및 양질의 장기 데이터 연구	대학 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23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8
대형					45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3				
연구집단 지원			사회과학분야 네트 워크 구축 및 성과 확산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및 단체	300백만원 (간접비 포함)	3년				7.1

붙임 2

고전국역 및 한국학진흥사업 개괄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연구 개시	'22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한 국 학 진 흥	해외 한국학 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해외 한국학 취약 기관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지원	해외대학	120백만원 이내	6.1.	2,437	신규13 계속26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세계의 한국학 중심대학을 중핵 대학으로 선정, 장기 지원하여 한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	해외대학	200백만원 이내	6.1.	3,424	신규6 계속14
		한국학 세계화랩 사업	국내외 석학의 학제적 공동연구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성과물을 산출하고 한국학 국제경쟁력 강화	대학/ 연구기관	300백만원	9.1.	2,699	신규5 계속4
		한국학 전략 연구소 육성사업	세계화랩 및 중핵대학 사업 등을 통해 한국학 일정수준 뿌리내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술거점 구축	해외대학/ 연구기관	100백만원	9.1.	500	신규2 계속3
		한국학술 번역사업	한국 고전 및 근현대 학술저서를 영문으로 세계에 소개하여 해외 한국학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대학/ 연구기관	20~80 백만원	9.1.	384	신규4 계속8
	국내 한국학 사업	K학술확산 연구소사업	해외 수요에 맞춘 한국학 각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좌 및 교재 개발, 보급을 통한 학술 한국 인지도 제고	대학/ 연구기관	1,000백만원	-	10,000	계속10
		한국학 국영문 사전편찬 사업	연구와 교육의 기반이 되는 한국학 관련 분야 국영문 사전 발간	대학/ 연구기관	80백만원 이내	6.1.	557	계속2 신규5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대형 기획총서 발간 지원을 통한 한국학 지식의 국내·외 확산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대학/ 연구기관	300백만원	6.1.	900	신규1 계속2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한국학자료센터구축) 국내외 권역별 자료센터 구축 지원	대학/ 연구기관	200백만원 이내	-	758.1	계속4
			(역사기초자료구축) 한국학의 주제별·분야별 기초자료연구	대학/ 연구기관	200백만원 이내	-	300	계속2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한국 구술자료 수집, 채록, 아카이브 구축	대학/ 연구기관		200백만원 이내	-	659.6	계속4		
고 전 국 역 지 원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한글, 한문, 과학기술고전 국역 및 한글고전 DB구축	-	-	연중	1,572	국역 31책 DB 20책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국역 및 DB구축	-	-	연중	1,966	국역 25책 DB 9책	
한국학중 추진 출연	한국학중추진출연	기관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 지원	-	-	연중	36,884		
한국고전 번역 출연	한국고전번역출연	기관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 지원	-	-	연중	22,435		

붙임 3

인문사회분야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 인문사회분야 신규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문 사회 학술 연구 교수	A유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B유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일반 연구	신진연구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중견연구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우수학자						공고	접수	선정 평가	연구 개시			
	일반공동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명저번역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인문 사회 연구 소	인문사회연구소 (미래공유연구형 포함)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인문 한국 플러스	2유형(재진입)						공고	접수	선정 평가	연구 개시			
저술출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인문도시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선정 공고				구입·보급		
사회 과학 연구 지원	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연구					공고	접수	선정 평가	연구 개시				
	연구집단지원				공고	접수	선정 평가	연구 개시					
학술 단체 지원 사업	학술대회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학술지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인문사회분야 계속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문 후속 세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				연구 개시 (21)			연구 개시 (20)					
	성과확산센터									연구 개시			
일반 연구	신진연구자					연구 개시							
	중견연구자							연구 개시					
	우수학자						연구 개시(21)			연구 개시(20)			
	일반공동				연구 개시 (21)			연구 개시 (20)					
명저번역								종료 평가 (19,20) /연구 개시					
인문 사회 연구 소	인문사회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연구 개시 (21)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구 개시 (16~20)			
	정책중점 연구소								연차점검		연구 개시		
학제간융합연구										연구 개시			
토대연구				종료평가		연차점검		연구 개시					
인문한국								총괄평가					
인한 플러 스	1유형		단계평가(19)			연구 개시 (17~20)							
	2유형	연차점검 (18)	연구 개시 (18)	연차점검 (17,18,20)			단계평가(19)		연구 개시 (18,20)	연구 개시 (18~20)			
저술출판						종료 평가/ 연구 개시							
인문도시				종료평가(18)				연구 개시		종료평가(21)			
사회 과학 연구 지원	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연구							단계평가(18)/ 연차점검(18,20)/ 연차평가(19)		연구 개시			

< 한국학진흥사업 신규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학 진흥	해외 한국학 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한국학 세계화랩 사업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한국학술 번역사업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한국학 전략연구소 육성사업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국내 한국학 사업	한국학 국영문사전 편찬사업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공고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한국학진흥사업 계속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학 진흥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결과평가 (18년 선정)		연차 보고서 검토 및 승인 (21년 선정)	연차점검 (20년 선정) 결과평가 (18년 선정)							결과평가 (19년 선정)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결과평가 (16년 선정)			연차보고서 검토 및 승인 (18년/21년 선정) 연차점검(20년 선정) 단계평가(19년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 (17년 선정) 최종연구 결과물 접수 (15년 선정)		
	한국학 세계화랩 사업	결과 보고서 접수 (16년 선정)				최종연구 결과물 접수 (15년 선정)	연차보고서 검토 및 승인 (18년/21년 선정) 연차점검 (20년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 (16년 선정)				연차보고서 검토 및 승인 (18년 선정)			
	한국학술 번역사업				연차보고서 검토 및 승인 (21년 선정)				결과보고 서 접수 (18년도 선정)	연차 보고서 검토 및 승인 (21년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 (18년/19년 선정)		
	한국학 전략연구소 육성사업						연차보고서 검토 및 승인 (20년/21년 선정)							
	국내 한국학 사업	K학술 확산연구소 사업					연차점검 (21년 선정)							
		한국학 국영문사전 편찬사업					연차점검 (21년 선정)			결과평가 (19년 선정)		연차점검 (21년 재공고선정)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1차년도 의무사항점검 (21년 선정)	결과 보고서 접수 (20년 선정)		결과평가 (19년 선정)		1차년도 의무사항점검 (21년 재공고 선정) 결과보고서접수 (20년 재공고 선정)			
		한국학기초 자료사업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 (18년 선정) 연차점검 (18년 선정) 단계평가 (19년 선정)					결과평가 (12, 19년 선정) 연차점검 (20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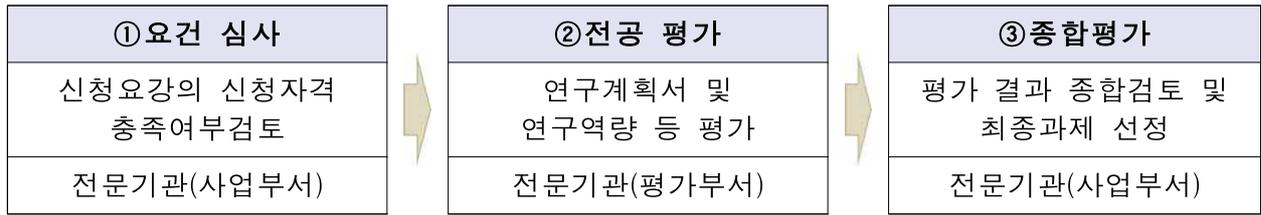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과제의 신청

- 공고
 - (방법) 전문기관 홈페이지 일괄 공고
 - (시기) 2022년 1~2월(30일 이상 공고)
 - ※ 세부사업별 공고 시기 및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별도 추진
- 과제의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 한국연구재단 위탁사업은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
 - (소속기관 확인)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학술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면서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등
-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1인 참여
 -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
 -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일정한 기관(연구소) 단위의 연구활동을 지원

□ 평가단계

○ 평가절차 및 내용



※ 평가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별, 사업별 및 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 가능

○ 요건심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

※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추가 확인

○ 전공평가

- (온라인평가) 분야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개별 평가

- (PM Review) 온라인평가의 경우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PM Reviewer는 재단 전문위원으로 구성

- (토론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분야 전문가 검토 및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 (발표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 발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분야 전문가 검토 및 토론을 바탕으로 평가

※ 평가위원의 선정은 [붙임9]의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에 따라 선정

○ 배제심사자(신청자별 2인 지정) 제도 운영

※ 대상사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A유형),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일반공동지원사업(일반공동유형), 인문도시지원사업

○ 종합평가 :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에서 주관

※ 단, 학술단체지원사업의 경우 재단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

□ 선정절차 및 내용

- (예비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지원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협약 체결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 장을 경유하여 지급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
- (지급시기)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간접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
- (간접비율 적용)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당해연도 시점의 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로 간접비 탄력적용 가능

□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다년 지원 과제
- (관리내용) 연차 및 단계 보고서 접수, 점검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평가연도 연구종료일은 최종연구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 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관리

○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저술출판지원사업 및 명저번역지원사업의 경우 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연구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내용) 연구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원문파일 탑재), 연구요약문(국·영문),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연구성과 및 연구 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및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 연차정산 보고는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하며, 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행

- (방법)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연구결과물 제출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결과물 제출 기한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 (제출 기준) **게재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개인	지원 년수 × 논문 1편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역서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역서는 논문 2편
공동 및 집단	지원 년수 × 논문 2편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시 주저자(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성과만 인정

※ (공동/집단연구)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회 이상, 그 외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최소 1회 이상 저자로 참여한 성과만 인정 (공동연구원이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함께 참여제한 조치)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 연구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부과 가능. 단, 이 경우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해당 사항 명시

○ 결과 조치

- 종료평가 결과 연구내용이 불량한 과제는 참여제한 등 조치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 가능

○ 연구성과관리

-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의무 탑재
 -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전문기관은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기초학문 자료센터(KRM)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기타사항

- 개인연구의 경우 임신·육아 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및 검토를 거쳐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 이내)을 허용하여 연구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
 - ※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및 검토를 거쳐 연구기간 연장(6개월, 1회에 한해 추가 연장 가능, 최대 1년)을 허용
-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승인 받아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며 해당 내용 위반 시 심의를 거쳐 제재할 수 있음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1)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이상인 사람

나.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임직원(단, 연구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자(참여연구원 포함)
- 2)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과제 연구

다.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2)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2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 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제외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공고 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의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
-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된다.
- ⑩ 개별 학술연구지원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아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하 법령 변경 시 연계하여 변경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예술학, 체육학)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3. 연구윤리 확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학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②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이하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3조(업무의 대행)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수행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사업비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사업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과 8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선정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예비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또는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학술진흥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제7조(협약의 체결)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및 연구책임자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단,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의 변화가 있는 때
 4. 다년과제의 경우 당해 연구과제의 연차실적 및 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 변경 요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해약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제2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8호에 따라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일괄 또는 건별로 지급 받은 사업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과 8의 기준을 따른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할 때 연구과제 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합이지바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전용이 필요한 때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직접비 내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사업비 총액(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사업비 이자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로만 한정한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 산입
2. 학술활동에 재투자
3.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

제11조(사업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도별 사업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를 사용·관리하는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업비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부담 및 사용내역이 사업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을 정산으로 볼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2.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충분한 자체 정산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사업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한 정부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사용 잔액
2.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용도 또는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비용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

4. 제13조 및 제14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용 잔액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연구과제별 사업비 사용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다년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다음연도 사업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사업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2조(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13조(중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하여 중간(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교육부장관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학술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성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학술활동결과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1. 학술활동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결과보고서 요약문
3. 학술활동결과보고서 개요 보고서
4.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물(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결과보고서, 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 등의 정보 입력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제16조(연구성과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협약에서 정한 형태의 연구성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연구성과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③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성과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성과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연구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비 고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하고, 지원 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⑤ 제2항 각 호의 연구성과를 제출할 경우, 제14조제1항의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성과 미제출) ① 교육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성과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시에는 제23조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학술활동결과 보고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과제의 협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의 이전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성과의 공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의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의 목록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정보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지원사업·연구과제 등 학술활동 수행에 관한 정보
2. 연구기관·연구자 등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성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

제22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술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학술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정부 사업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의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2.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불량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다만, 다음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6의 참여제한 처분 기준 및 제59조제2항 관련 별표 7의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을 따른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5조 및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제5조에 따른 선정평가의 경우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23조에 따른 제재처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부가 의무) 제7조의 협약에 따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표준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사업명			
총괄 연구과제명 (해당시 작성)			
연구과제명			
공고번호		연구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2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2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소속 : 성 명 :

[협약 당사자]
(교육부 장관 업무대행)
연구재단 이사장

(성 명)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 의 장

(성 명)

직 인

공 동 연 구 기 관 의 장

(성 명)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협약용) 1부 2. 기타 부가 서류 1부
------	--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전문기관명(해당시 작성) :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명칭을 기재
5. 공고번호: 연구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 신청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7. 연구기관명 :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기재
8. 전체 연구기간: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
9. 단계 연구기간(해당시 작성): 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기간을 기재
10.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기재
11. 연구기관 부담금 :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2.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미기재)
13. 미포함 예산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미기재)
14. 기관장 서명: 연구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협약의 세부조건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하 법령에 따라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계획, 전문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수행계획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의 연구과제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3조(주관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기관과의 협력
3.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부정행위 등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4. 그 밖에 법령에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연구과제를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과제들의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기관과의 협력
 3.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

11.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부정행위 등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4. 그 밖에 법령에서 공동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작성
2. 참여연구원의 선정·관리 및 감독
3. 사업비의 사용발의
4.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의 제출
5. 연구성과(논문, 저·역서 등)의 게재 또는 출판 및 제출
6.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등의 방지
7. 그 밖에 법령에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5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 중단 시점 30일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보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과제수행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활동결과 보고)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술활동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결과보고서 요약문
3. 학술활동결과보고서 개요 보고서
4.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물 등의 정보 입력

제9조(연구과제의 평가)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결과평가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제10조(연구성과 제출) ①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성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금		
			계	1차지급 (예정일)	2차지급 (예정일)
1차연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2차연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② 연구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중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사업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부담 (예정일)	2차부담 (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2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③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해당 연구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비카드로 지정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담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담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담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⑤ 그 밖에 사업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연구성과의 소유) 연구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성과의 관리)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4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14조(연구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기관은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성과가 논문(저역서 포함)인 경우: 정부의 사업비 지원 연도, 사업비를 지원한 중

양행정기관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2. 연구성과가 특허인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학술연구지원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별 기여율(연구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과제의 연구기간

2. 연구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사업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학술연구지원사업명

②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연구성과 목록을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활동결과보고서 : 제출 후 3개월 이내

2. 연구성과(논문/저·역서 등) : 제출 후 3개월 이내

④ 그밖에 연구성과의 활용·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16조(보안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에 따른다.

제17조(연구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학술활동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및 제20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및 제20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사업비 환수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와 제59조의 규정과 연구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19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외에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제공하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제22조(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부가 조건) ①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성비위 및 갑질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학술지원 대상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를 즉시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성비위 및 갑질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구분: 연구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기간 변경, 최종 목표 변경, 연구내용 변경, 연구과제 중단 중 해당사항에 [√] 표시
2. 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을 기재
3. 내역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을 기재
4.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명칭을 기재
5.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
6. 연구기간
 - 가. 전체: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을 기재
 - 나. 해당단계: 연구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단계의 연구기간을 기재
7.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명칭을 기재
8. 연구기관 이외 기관 :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연구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
9. 신청인: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주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
10. 요청사항: 기존내용 대비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11. 요청사유 : 연구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